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리 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구리시장

1. 제안이유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정화조 청소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 ~ 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11% 인상함. (안 별표 1)

※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1~3 단계 차등 10%, 11%, 12% 인상

❍ 2021 ~ 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1.2%)만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함. (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2 참조

❍「하수도법」 제65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

관계 법령 이력	해당 조례 제·개정 이력
□ 하수도법 1966. 8. 3. 제정 2022. 12. 27. 일부개정 □ 하수도법 시행령 1968. 1. 4. 제정 2023. 6. 20. 일부개정 2024. 3. 19. 일부개정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 1996. 01. 08. 전문개정 - 2011. 02. 28. 일부개정 - 2012. 12. 11. 일부개정 - 2014. 04. 18. 일부개정 - 2014. 12. 30. 일부개정 - 2017. 12. 13. 일부개정 - 2019. 12. 20. 일부개정 - 2020. 06. 16. 일부개정 - 2021. 09. 28. 일부개정 - 2022. 08. 31. 일부개정 - 2022. 12. 22. 일부개정 - 2024. 03. 08. 일부개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붙임 3 참조

❍ 예고기간 : 2024. 4. 16. ~ 5. 7.(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결과 : 붙임 4 참조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사전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 그 밖의 부서협의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5 참조

4)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5) 경기도 관련 부서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계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7,801원	16,301원	1,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15원	1,115원	2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정)하 수 과[1] (부)환 경 과[2]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하수과장 최성미 (부)환경과장 김의규
	팀 장 직위·성명	(정)하수행정팀장 강은주 (부)환경관리팀장 김지웅
	담 당 자 성명·전화번호	(정)지방환경주사 강은주 550-8425 (부)지방환경주사보 박송월 550-2862

1) 하수도 사용료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수수료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용 구분 (㎥/월)	㎥당 단가(원)		비고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2024년 9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0～20	598	658	
	21～40	899	998	
	41이상	1,140	1,277	
일반용	0～30	754	829	
	31～50	1,073	1,191	
	51～100	1,877	2,083	
	101～300	2,557	2,864	
	301이상	3,007	3,368	
욕탕용	0～200	1,135	1,249	
	201～300	1,177	1,306	
	301～500	1,389	1,556	
	501이상	1,473	1,650	
산업용	1㎥당	1,166	1,294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비고
		2020년 3월분부터	2021년 1월분부터	
가정용	0~20	511	598	
	21~40	769	899	
	41이상	975	1,140	
일반용	0~30	645	754	
	31~50	917	1,073	
	51~100	1,604	1,877	
	101~300	2,186	2,557	
	301이상	2,570	3,007	
욕탕용	0~200	970	1,135	
	201~300	1,006	1,177	
	301~500	1,188	1,389	
	501이상	1,259	1,473	
산업용	1㎥당	997	1,166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 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7]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 분	수수료		
	계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6,160원	14,660원	1,500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203원	1,003원	200원

개 정 안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비고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2024년 9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0~20	598	658	
	21~40	899	998	
	41이상	1,140	1,277	
일반용	0~30	754	829	
	31~50	1,073	1,191	
	51~100	1,877	2,083	
	101~300	2,557	2,864	
	301이상	3,007	3,368	
욕탕용	0~200	1,135	1,249	
	201~300	1,177	1,306	
	301~500	1,389	1,556	
	501이상	1,473	1,650	
산업용	1㎥당	1,166	1,294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 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7]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 분	수수료		
	계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750리터까지)	17,801원	16,301원	1,500원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315원	1,115원	200원

붙임 2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관계 법령]

하수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현행 조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03.08](일부개정) 2024.03.08 조례 제22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12.13.>

② 하수관로의 청소·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2022.8.31.>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13., 2022.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2022.8.31.>

1.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10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개정 2021.9.2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2021.9.28.>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6., 2021.9.28., 2022.8.31.>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하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0.6.16., 2021.9.28.>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2.22.>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징수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유치

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4. 4. 18> <개정 2020.6.16., 2021.9.28.>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사용료의 1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사용료 및 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8.>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한다.<개정 2020.6.16.>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2.8.31.>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측정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12.24.>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28., 2022.8.31.>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3., 2020.6.16.,

2022.8.31.>

1.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28.>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개정 2021.9.28.>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신청 등(이하 “행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그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개정 2021.9.28.>

나. 1회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21.9.28.>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5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3.> <개정 2020.6.16.>

1. 부과시기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시설설치, 변경설치 등의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8.>

2. 납부시기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3., 2021.9.28., 2022.8.31.>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의 행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행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30., 2017.12.13.>, <개정 2021.9.28., 2022.8.31.>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12.13.>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삭제 <2017.12.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3., 2022.8.31.>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2.13.>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9.28.>

2. 단위단가 : 별표 6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7.12.13.>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3., 2021.9.28.>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장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청소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 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26조(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리터당 2원을 징수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제25조에 따라 배출자에게 분뇨수집 시 징수한 처리 수수료이며, 자체 청소의무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로서 이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2022.8.31.>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료를 매월 고지된 납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다. <개정 2021.9.28.>

④ 시장은 분뇨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집된 분뇨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분뇨수집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8.31.>

2. 삭제 <2021.9.28.>

⑥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처

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별표 8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6.16.>

② 제1항 별표 8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별표 5의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별표 8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6.16.>, <개정 2021.9.2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 별표 8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0.6.16.>

④ 제1항 별표 8의 제3호부터 제7호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6.16.>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3.,2019.12.20.>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2022.8.31.>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12.20.>

제29조(연체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 점용료,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11., 2022.8.31.>

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2012.12.11>

제2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3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9.20., 2021.9.28.>

제31조(시행규칙) 삭제 < 2022.8.31.>

부 칙 <조례 제2051호, 202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78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02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구분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비고
		2020년 3월분부터	2021년 1월분부터	
가정용	0~20	511	598	
	21~40	769	899	
	41이상	975	1,140	
일반용	0~30	645	754	
	31~50	917	1,073	
	51~100	1,604	1,877	
	101~300	2,186	2,557	
	301이상	2,570	3,007	
욕탕용	0~200	970	1,135	
	201~300	1,006	1,177	
	301~500	1,188	1,389	
	501이상	1,259	1,473	
산업용	1㎥당	997	1,166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7]

분뇨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계	수집・운반	처리
18리터	210원	174원	36원

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계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160원	14,660원	1,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03원	1,003원	200원

<비 고>

1.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2. 처리는 분뇨처리장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증빙자료)

■ 입법예고(결과보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 리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보고**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4. 4. 16. ~ 5. 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부서협의 결과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사전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심사대상 아님
   라. 그 밖의 부서협의 : 해당사항 없음

4. 향후계획 : 소비자정책심의 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붙임 1.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하수행정팀장	**강은주**	하수과장	**최성미**	환경관리사업소장	2024. 5. 8. **조영아**
협조자	주무관	**박송철**	환경관리팀장	**김지용**	
시행	하수과-5742			접수	

우 1196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교문동, 교문2동) (수택동) / http://www.guri.go.kr
전화번호 031-550-8425 팩스번호 031-550-2207 / kej0943@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붙임 4 부서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감사담당관)(1/2)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해당 없음
	사전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 리 시

수신 하수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 알림(2024-30)

1. 하수과-4727(2024.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붙임 '결과통보서' 참조)
나. 사전규제심사 결과

자치법규명	규제 사항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비고
	신설·강화	완화·폐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없음	없음	해당없음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구 리 시 장 구리시장인

주무관 전용희 감사팀장 엄가 감사담당관 전결 2024. 4. 17. 오형근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218 (2024. 4. 17.) 접수 하수과-4751 (2024. 4. 17.)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 http://www.guri.go.kr
전화번호 031-550-2074 팩스번호 031-550-8762 / j in34170@korea.kr / 비공개(5)

■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감사담당관)(2/2)

■ 구리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 평가담당 : (소속)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8급 (성명) 진용희

☐ 입안주무부서 : 하수과 ☐ 통보(조치)일 : 2024. 4. 17.(수)

☐ 통보내역 : **원안동의**

관련 자치법규(제정·개정안)	통보내역(개선의견)
"별지와 같음"	개정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각종 사용·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 동의함.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1/2)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치내용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 리 시

수신 하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경기구리031)

1. 경기도 구리시 하수과-4767(2024.4.17.)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4A경기구리031) 1부. 끝.

가 족 복 지 과 장

주무관	김은정	여성정책팀장	박영정	가족복지과장	전결 2024. 4. 17. 전혜승

협조자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2/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구리031			
정 책 명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부서명	하수과		
	담당자명	강은주	전화번호	031-550-84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4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하수과)	○ 2021 ~ 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11% 인상 (안 별표 1) ※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1~3 단계 차등 10%, 11%, 12% 인상 ○ 2021 ~ 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1.2%)만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 (안 별표 7)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구리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은경/031-550-8827)

하수과장 귀하

■ 소비자정책심의(일자리경제과)(1/2)

협의부서	심의내용	심의결과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정책심의	원안가결

구 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제3회 구리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교통행정과-20228(2024.4.30.)호, 하수과-5746(2024.5.8.)호 및 일자리경제과-21348(2024.5.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상정의뢰한 안건에 대하여 2024년 제3회 구리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일자 : **2024.5. 16.(목)**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결과 : **원안가결 3건**

의안번호	안건명	소관부서	심의결과	비고
2024-3	2024년 구리시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	교통행정과	**원안가결**	
2024-4	구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하수과	**원안가결**	
2024-5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하수과 (환경과)	**원안가결**	

붙임 구리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구 리 시 장

수신자 교통행정과장, 하수과장, 환경과장

소상공인지원 팀장 **김신욱** 일자리경제과 전결 2024. 5. 17. 장 **강은욱** 협조자

시행 일자리경제과-21383 (2024. 5. 17.) 접수 하수과-6111 (2024. 5. 17.)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 http://guri.go.kr

전화번호 031-550-2389 팩스번호 031-550-2100 / kimshin33@korea.kr / 비공개(5)

청렴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심의(일자리경제과)(2/2)

구리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table>
<tr><td>의안번호</td><td>제 4 호</td><td>의결연월일</td><td>2024. 5. 16.</td><td>제출부서</td><td>하수과</td></tr>
<tr><td>의 안 명</td><td colspan="5">구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td></tr>
<tr><td>심의요지</td><td colspan="5">
○ 추진 배경
-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인상)하고자 함.
○ 심의 내용
▸구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 2021~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11% 인상
※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1~3단계 차등 10%, 11%, 12% 인상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단계별</th><th>사용량(톤)</th><th>현행</th><th>인상률</th><th>변경(안)</th></tr>
<tr><td rowspan="3">가정용</td><td>1단계</td><td>1~20</td><td>598</td><td>10%</td><td>658</td></tr>
<tr><td>2단계</td><td>21~40</td><td>899</td><td>11%</td><td>998</td></tr>
<tr><td>3단계</td><td>41이상</td><td>1,140</td><td>12%</td><td>1,277</td></tr>
<tr><td rowspan="5">영업용</td><td>1단계</td><td>0~30</td><td>754</td><td>10%</td><td>829</td></tr>
<tr><td>2단계</td><td>31~50</td><td>1,073</td><td>11%</td><td>1,191</td></tr>
<tr><td>3단계</td><td>51~100</td><td>1,877</td><td>11%</td><td>2,083</td></tr>
<tr><td>4단계</td><td>101~300</td><td>2,557</td><td>12%</td><td>2,864</td></tr>
<tr><td>5단계</td><td>301이상</td><td>3,007</td><td>12%</td><td>3,368</td></tr>
<tr><td rowspan="4">욕탕용</td><td>1단계</td><td>0~200</td><td>1,135</td><td>10%</td><td>1,249</td></tr>
<tr><td>2단계</td><td>201~300</td><td>1,177</td><td>11%</td><td>1,306</td></tr>
<tr><td>3단계</td><td>301~500</td><td>1,389</td><td>12%</td><td>1,556</td></tr>
<tr><td>4단계</td><td>501이상</td><td>1,473</td><td>12%</td><td>1,650</td></tr>
<tr><td colspan="3">산업용(1㎥당)</td><td>1,166</td><td>11%</td><td>1,294</td></tr>
</table>
- 구리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 2023년 결산기준 구리시 공공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전년도 53.7% 대비 46.53%로 총괄원가 요금인상 요인이 114.9%로 전년도 86.23%보다 증가함
· 구리하수처리시설 노후화 ·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설 노후화에 의한 보수공사 증가
·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증가
· 203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구리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강화 대응 및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불가피
☞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차등 인상
☞ 2021~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인상률(11.2%↑)을 고려
(2021년도 2.5%↑, 2022년도 5.1%↑, 2023년도 3.6%↑)
➲ 하수도 사용료 11% 인상 : 가정용·영업용·욕탕용 1,2,3단계별 차등 10%, 11%, 12% 인상
</td></tr>
<tr><td>심의결과</td><td colspan="5">원안가결</td></tr>
<tr><td>비 고</td><td colspan="5"></td></tr>
</table>

<table>
<tr><td>의안번호</td><td>제 5 호</td><td>의결연월일</td><td>2024. 5. 16.</td><td>제출부서</td><td>하수과(환경과)</td></tr>
<tr><td>의 안 명</td><td colspan="5">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인상안</td></tr>
<tr><td>심의요지</td><td colspan="5">
○ 추진 배경
- 정화조 청소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인상)하고자 함.
○ 심의 내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 2021 ~ 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1.2%)만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수집·운반 수수료</th><th colspan="2">처리수수료</th></tr>
<tr><th>기본요금
(750ℓ)</th><th>초과요금
(100ℓ당)</th><th>기본요금
(750ℓ)</th><th>초과요금
(100ℓ당)</th></tr>
<tr><td>현 행</td><td>14,660원</td><td>1,003원</td><td>1,500원</td><td>200원</td></tr>
<tr><td>인상(안)</td><td>16,301원
(11.2%↑)</td><td>1,115원
(11.2%↑)</td><td colspan="2">기존과 동일</td></tr>
</table>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 물가 상승과 유류비 · 인건비 인상 등 수수료 증가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기존 수수료를 유지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가중.
· 2023년 분뇨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결과 누적 물가상승률 적용시 약 80%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우리시 톤당 수집·운반 수수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로 평균보다 밑돌고 있어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수집·운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상 불가피함.
☞ 주민 부담과 주민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폭인 최근 3년(2021~202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11.2%로 인상(2025. 1. 1. 부터 2030. 12. 31.까지 적용)
☞ 처리 수수료는 하수처리장 연간 총 운영원가에서 분뇨처리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3%로, 경기도 평균 처리수수료(1,535원/톤) 및 주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시에서 받는 처리수수료는 현행 유지.
</td></tr>
<tr><td>심의결과</td><td colspan="5">원안가결</td></tr>
<tr><td>비 고</td><td colspan="5"></td></tr>
</table>

붙임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및 별표 7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발생비용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1) 하수도 사용료 수입

○ 2023사업연도 구리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수입예산결산)기준 (천원)

사용료수익	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비고
2023년도	16,351,419	8,234,675	7,936,484	162,230	18,030	
1차년도	16,950,971	8,536,613	8,227,488	168,178	18,691	'24.9월부터
2차년도	18,150,075	9,140,489	8,809,497	180,075	20,013	인상률11%

- 1차연도 사용료수익 증가액 : 23사업연도 결산수입 16,351,419천원*11%*4월/12월= 599,552천원
- 2차연도 사용료수익 증가액 : 23사업연도 결산수입 16,351,419천원*11% =1,798,656천원

2)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수입 : 해당없음

※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의 수입으로 시 수입 및 비용 발생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비고
총 비용			해	당	없	음		
기존비용								
증가비용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장 최성미, 환경과장 김의규

(뒷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599,552	1,798,656	1,798,656	1,798,656	1,798,656	7,794,176	
하수도 사용료 증가액		599,552	1,798,656	1,798,656	1,798,656	1,798,656	7,794,176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 기타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